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001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26. 정영환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10. 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5. 10. 20.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정영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의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규정(안 제1조)

-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 정책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 의장·상임위원장·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3)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15명 이내로 구성,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
- 전문가, 전직 의원·공무원, 사회적 덕망 있는 사람 위촉
- 위원회 사무는 의정담당이 간사로 수행

4) 임기(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중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시: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임기

5) 위원의 의무(안 제5조)

- 자문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알게 된 기밀은 누설 금지

6)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6조)

- 사임, 역할 미수행, 기밀 누설 등 해제 사유 명시

7) 회의 운영(안 제7조)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요구 시 소집
- 소집 요구 시 관련 안건 및 자료 제출 의무
- 위원회 회의 개의 시 출석 및 의결사항

8)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직무 수행 불가 시 부위원장 대행

9) 수당 등(안 제9조)

- 회의 참석, 현장 확인 등 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 정책 연구 등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0) 운영세칙(안 제10조)

-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46호

- 예고기간: 2025. 9. 26.(금) ~ 10. 1.(수)[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래훈)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의정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위원 구성(안 제3조)

-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여 군의회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함
-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도록 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함
- 위촉 대상의 전문성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자문 기능 확보 가능

- 회의 운영(안 제7조)

- 의장 주도하에 운영하되 상임위원장 요구권을 명시하여 기능적 균형 유지
- 회의 결과 보고 절차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가능

- 위원 의무·해제 조항(안 제5조·제6조)

- 성실의무와 기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비활동 위원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함

- 수당 및 예산(안 제9조)

- 기존 조례(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므로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음
- 다만 연구활동 지원 시에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해야 함

○ 적정성 및 타당성

-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6 (지방의회의 권한)에 부합함
-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검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합검토 의견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0. 2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